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30945(본소), 2021가합31030(반소) 판결
[주식매수청구 · 주식반환청구 등]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12150(본소), 2022나1216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3094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피 고 1.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2. C

피고(반소원고 포함)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원고(반소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콘크리트 생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 4. 23.경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8. 1. 8.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10. 17.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0. 5. 31.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C은 2018. 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피고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 피고 C은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피고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C은 2018. 1. 8.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되고,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원고에게 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들로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00. 5. 31. D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1,000주를 E(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의 2002년도 및 2015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주주 및 보유 주식수가 피고 C 7,000주, F 3,000주, G 2,000주, 원고 2,000주, E 1,000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F, G가 보유하던 주식의 주주명의로는 2016. 4. 15.경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피고 C 앞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을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D는 이 법원에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차명주주가 되었다가 2000. 5.경 피고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0주, E에게 1,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E는 ‘피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피고 C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D, F, G가 차명주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 5.경 D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D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C이었고,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여 그 주식인수대금을 피고 C이 부담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된 원인관계에는 명의신탁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을 깨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2019. 10.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7년에 입사하여 2009. 12. 31.경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퇴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7. 7.경까지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 내지 실명전환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여하였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무렵까지 공장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C 다음으로 서열 2위의 위치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로 추정되고,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반소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8. 1. 8.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1.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송현정, 판사 박예지

목 록

주식 발행회사: 피고 B 주식회사(등록번호: H)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수량: 2,000주

주주명부상 주주: 원고(A). 끝.

